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77-9151~2 / 전송 778-3467
 처리부서 : 주차계획과 (중구 무교동 체육회관 4층) 담당 : 장상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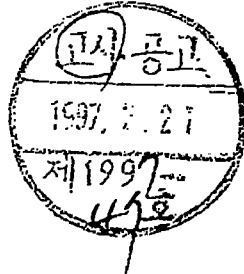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주차 91110-187

시행일자 1997.2.21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	장
보존			
교통관리실장	전결		
교통기획관			
주차계획과장		법무담당관 심사필	
주차시설계장	"교육"	주차관리계장	
기안	장 상 규	협조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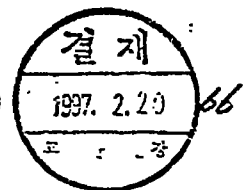
제목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

· 1. 남북97-101호('97.2.15)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면목유수지복개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(주)남북상사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승인요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도시계획사업(주차장건설) 시행허가조건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
- 위치 : 중랑구 면목동 168-2번지
- 시설규모 : 평면노외 1,262대(공사면적 48,918㎡)



나. 변경내용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사업시행자의 주소 · 성명	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68-2 (주)남북상사 대표이사 윤봉중	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(주) 대우 대표이사 강병호
사업기간	'92.3.26 ~ '96.6.30	'92.3.26 ~ '98.4.30

결재 및 직인

○ 변경사유

- 사업시행자인 (주)남북상사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(공정69%)

되어 조속한 공사재개가 어려운 실정으로서

- 사업시행자인 (주)남북상사와 (주)대우가 사업시행권의 양도양수를

약정하고 우리시에 승인을 요청함.

다. 변경 인가조건

○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로서 (주)남북상사가 행하
여야 할 의무 및 책임등은 변경 사업시행자인 (주)대우에 인계됨.

○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(주)남북상사와 (주)대우 상호간에
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제반사항은 우리시와는 무관하며,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어떠한
책임도 지지 아니함.

따로붙임 : 관련서류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(주)남북상사 대표이사 윤봉중 귀하

제목 :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남북97-101호('97.2.15)와 관련입니다.

2. 귀사에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**면목유수지** 복개주차장 건설 및 운영
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승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
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니,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"제1안 제2항 가~다목 이기시행" 끝.

(제 3 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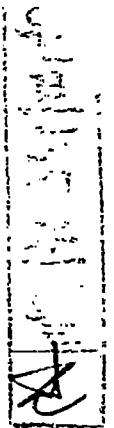
수신 : (주)대우 대표이사 강병호 귀하

제목 :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사업시행자 변경 통보

1. 남북97-101호('97.2.15)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과 관련하
여 귀사와 (주)남북상사간에 계약한 사업시행허가권 양도양수를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
을 통보하니, 관련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"제1안 제2항 가~다목 이기시행" 끝.



(제 4 안)

수신 : 중량구청장

참조 : 교통행정과장, 하수과장

제목 :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통보

1. 남북97-101호('97.2.15)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시행자인 (주)남북상사에서 사업자변경 및 사업기간연장 승인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

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기에 통보하니,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가. '제1안 제2항 가~다목 이기시행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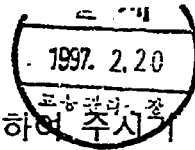
따로붙임 : 약정서 사본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5 안)

수신 : 공보1담당관

제목 : 시보게재 의뢰



1.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를 의뢰하니,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 실시계획 변경인가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26조

라. 게재 희망일시 : 1997. . .

따로붙임 : 고시문 2부. 끝.

주차계획과장

Vertical stamp and signature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.

고 시 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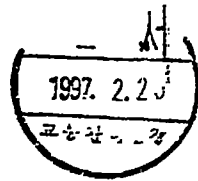
제1차	1997. 2. 25	제 51 호
담당자	법제심사지장	법무담당관

서울특별시고시제1997- 호

도시계획사업(주차장) 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92호('92.3.26)로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 시행허가된 면목유수지 북개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주차계획과(전화:777-9151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.

1997년 2 월 일



서울특별시

가. 변경내용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사업시행자의 주소 · 성명	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0-1 ('92. 4. 8 증정구 변경을 158-2로 주·변경) (주)남북상사 대표이사 윤봉중	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(주) 대우 대표이사 강병호
사 업 기 간	'92. 4 ~ '94. 3	'92. 4 ~ '98. 4. 30

다. 기타 사업대상지의 위치, 사업의 종류 및 명칭과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, 수용 또는 사용토지명세와 토지 또는 건물 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권리인의 주소·성명은 변동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
 도시계획과